

김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증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2년 4월 25일 김포시장
 나. 회부일자 : 2002년 5월 2일
 다. 상정일자 : 2002년 5월 2일
 라. 의결일자 : 2002년 5월 4일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행정기관의 「주 5일 근무제 시범실시」를 뒷받침하기 위해
 - 토요일에 휴무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(토요일 휴무제 도입)
- 휴직을 했다가 복직한 경우 당해연도에는 연가를 할 수 없어 고충 호소
 - 일반 휴직자의 연가 가능일수 계상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연가공제 방법개선
(연가 수혜범위 확대)

나. 주요골자

- 1)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토요일에 소속 공무원을 월 1회 동시에 휴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함.(안 제16조의2 제1항)
- 2) 휴직자의 연가 가능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현행 「연가일수에서 휴직일수를 바로 공제」하는 방식에서 당해연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가를 할 수 있도록 「휴직일수를 월환로 환산하여 공제」(아래 산출방식)도록 함.(안 제20조 제2항)

$$\frac{12(\text{월})-\text{당해연도 휴직기간(월)}}{12(\text{월})} \times \text{당해연도 연가일수}$$

- 3) 국민의료보험법 시행령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으로 명칭이 변경('01년 6월)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함.(안 제22조)

3. 전문위원 견토태고요지(전문위원 이정찬)

- 본안건은 주(週) 5일 근무제도의 도입에 대비하고 토요일 휴무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토요일 휴무를 월 1회 실시하고 휴직 후 복직한 자가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휴직자에 대한 연가일수 공제방법을 개선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국가공무원복무규정과 행정자치부의 동 조례표준안에 의한 적정한 조치가 되겠습니다.

4. 질의·답변요지

질의요지	답변요지
해당	없음

5. 토론요지

가. 찬성 : 없음 나. 반대 : 없음

6. 심사결과 원안가진

7.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

김포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2년 4월 25일 김포시장
 나. 회부일자 : 2002년 5월 2일
 다. 상정일자 : 2002년 5월 2일
 라. 의결일자 : 2002년 5월 4일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정부의 제2단계 읍·면·동 기능전환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추진과 관련하여 지난 2001. 7. 6. 우리시 조례를 재정하고 2002. 3. 20. 김포3동 개소와 함께 3개 동지역에 대한 문화센터가 개소하여 운영되고 있음.
- 한편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정부의 당초 조례준칙에 대하여 각 시민단체 및 학계와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일선 읍·면·동 및 주민자치위원회로부터 상당부분 개정을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으며, 이렇게 제기된 각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보완지침을 마련하여 전국적인 조례개정 표준(안)을 시달하였고, 이를 각 동장과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시 문화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주민자치 활동 프로그램 활성화,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 자율성 확대 등을 위하여 관련조례를 개정 죄자 함.

나. 주요골자

【문화센터 운영관련】

- 주민자치센터 명칭을 “문화센터”로 함.
- 운영대상을 면까지 확대
- 지역사회 진흥 및 주민자치 기능 우선적 수행(안 제5조)
- 문화센터 운영 사무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분담, 수탁자에 대한 사업비 지원 등
(안 제7조)
- 사용료·수강료 등의 요율결정, 감면, 정수주체, 관리·집행요령 등(안 제10조)